

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

일부개정예규안

1. 개정이유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전부개정법률[법률 제17574호(2020. 12. 8. 공포, 2021. 6. 9. 시행)] 중 등기촉탁에 관한 제21조의 규정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「부동산등기법」 제52조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음

3.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. 다. 1) 나) 중 “새주소”를 “도로명주소”로 한다.

4.에 라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촉탁에 의한 등기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부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「부동산등기법」 제52조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3. 건물 표시 부분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. ~ 나. (생 략) 다. 등기원인증서(매매계약서,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) 1) (생 략) 가) (생 략) 나)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때에도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[건물대장 정보, 행정안전부 “<u>새주소 안내시스템</u>(http://www.juso.go.kr)”의 조회 결과물 등, 이하 “도로명주소 정보”라고 함]에 의하여 해당 소재지번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된다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. 4. 등기명의인 표시 부분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. ~ 다. (생 략) <u>라. (신 설)</u>	3. 건물 표시 부분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등기원인증서(매매계약서,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) 1) (현행과 같음) 가) (현행과 같음) 나) ----- ----- ----- ----- “도로명주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4. 등기명의인 표시 부분의 도로명주소 표기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촉탁에 의한 등기</u> <u>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에 따라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등기부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「부동산등기법」 제52조제1호</u>

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	
연락처	(02) 3480-6041